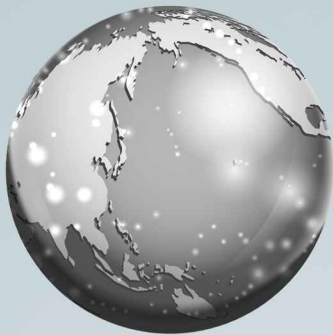


전략물자 14-07

# 전략기술관리 가이드스

2014. 12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 Contents

제1장. 전략기술 관리제도의 개념	1
전략물자(Strategic Item)란?	1
전략기술(Strategic Technology)이란?	1
수출관리제도(Export Control)의 개념	3
전략기술 수출관리	3
제2장. 전략기술의 이전관리	4
전략기술 무형이전관리 지침	4
허가대상 기술이전의 범위	5
허가제외 대상기술	6
제3장. 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방법	7
전략기술해당여부 확인	7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이용한 확인	7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통한 확인	8
전략기술 확인지표를 통한 확인	10
온라인을 통한 사전판정 신청	11
제4장. 전략기술 수출허가 이행절차	15
수출허가 이행대상 필요여부 판단절차	15
기술이전(수출) 형태별 허가제도	15
수출허가 신청절차	16
수출허가 신청서류	17
수출허가 소관부처	19
수출허가 소요기간	19
수출허가 유효기간	19
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19
수출허가 면제사항	19
불법수출 시 법적 처벌	20
비법규적 제재	20

# Contents

제5장. 전략기술 자유품관리 .....	22
전략기술 자유품관리체제 .....	22
전략기술 자유품관리체제 구축요건 .....	22
제6장. 전략기술 관리 Best Practice .....	27
美 Stanford 대학 .....	27
美 NASA .....	29
日 나고야 대학 .....	31
韓 KAIST .....	32
제7장. 전략기술 무형이전 FAQ .....	33
부    록 .....	60
용어정의 .....	62
대외무역법 .....	66

## ○ 제1장. 전략기술 관리제도의 개념

### ● 전략물자(Strategic Item)란?

-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등의 용도로 전용(專用)될 수 있는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및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합니다.

### ● 전략기술(Strategic Technology)이란?

- 전략물자의 개발·생산·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략물자라는 용어에 전략기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Development)	Design, Design research, Design analysis, Design concept, Assembly and testing of prototype, Pilot production scheme, Design data, Process of transforming design data into a product, Configuration design, Design integration, Layout,
생산 (Production)	Production engineering, Manufacture, integration, Assembly(mounting), Testing, Quality assurance, Construction, Inspection
사용 (Use)	operation, Installation(including on site installation), maintenance, Repair, Overhaul, Refurbishing

#### ※ 전략기술과 혼동되는 개념?

‘전략기술’이라는 용어는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그 개념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스에서 명시한 ‘전략기술’은 대외무역법 제19조가 정의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을 말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유사개념의 예시>

예시 1 : 현재의 제품 또는 제품 로드맵 상에서 정의된, 향후 진화된 제품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기술로 시장환경, 경쟁제품,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

예시 2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 전략기술관리 가이드스

○ 전략기술은 현재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로 고시되어 있으며, '14년 12월말 현재 1,405여개 기술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고시된 분야별 전략기술과 구체적 기술 예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해당기술	구체적인 기술의 예
별표 2	제1부 특별소재 및 관련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합재료(탄소섬유), 적층 구조물 관련 기술</li> <li>•방사선 차폐창 관련기술</li> <li>•섬유생산장비 기술</li> <li>•알루미늄 및 티타늄 합금기술</li> </ul>
	제2부 소재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마찰 베어링 시스템 관련 기술</li> <li>•공작기계 및 관련부품 관련기술</li> <li>•화학반응용기 관련기술</li> <li>•가스감지시스템, 동결건조기술</li> </ul>
	제3부 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방사전, 내열성 집적회로 설계기술</li> <li>•회로망 분석기술</li> <li>•1·2차 셀 관련기술</li> <li>•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술</li> <li>•적층성장, 리소그래피 장비기술</li> </ul>
	제4부 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이크로회로 관련기술</li> <li>•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차동분석기 관련 기술</li> <li>•내열 및 내방사전 전자조립체 기술</li> </ul>
	제5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섬유 통신케이블, 위상배열안테나 관련 기술</li> <li>•전파방해 장치 및 부품기술</li> <li>•마이크로 웨이브 단일칩 집적회로 기술</li> <li>•원격통신 전송장비 및 교환기 기술</li> </ul>
	제6부 센서 및 레이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중용 음향감지, 청음기, 선수방위 센서 및 상대속력 수중음파탐지 기술</li> <li>•고체촬상소자 관련기술</li> <li>•수중전기장 센서 및 자기경도측정기 관련 기술</li> <li>•레이저증폭기 및 발진기 관련기술</li> </ul>
	제7부 항법 및 항공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법시스템 관련기술(가속도계, 자이로, 관성시스템, 위성항법, 고도계)</li> <li>•비행제어시스템, 서보밸브 관련기술</li> <li>•유도장치 관련 기술</li> </ul>
	제8부 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잠수정, 표면효과선, 수중익선, 소수선면적 선박 관련기술</li> <li>•추진프로펠러, 동력전달 시스템 일체 및 소음감소장치 관련기술</li> <li>•Water tunnel 관련 기술</li> </ul>
	제9부 항공우주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스터빈엔진, 액체로켓 추진시스템, 관측로켓시스템, 펄스제트 엔진시스템 관련기술</li> <li>•연소조절장치 로켓 단 및 무인항공기 관련기술</li> </ul>
	제10부 핵물질, 시설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핵반응, 중성자공학기술</li> <li>•동위원소 분리용 장치부품 관련기술</li> </ul>
별표 3	군용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강무기, 사격통제장치 관련기술</li> <li>•독성작용제 제조기술</li> <li>•극저온 및 초전도 장비 관련기술</li> </ul>

## 수출관리제도(Export Control)의 개념

-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전략물자의 유출을 저지하는 제도로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 원칙과 통제품목을 정하면 회원국은 자국법에 반영하여 수출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

< 국제수출통제체제 현황 >

구 분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체제명(발족년도)	NSG <sup>1)</sup> ('78)	AG <sup>2)</sup> ('85)	MTCR <sup>3)</sup> ('87)	WA <sup>4)</sup> ('96)
회원국수 (한국가입년도)	48개 회원국 ('95가입)	41개 회원국 ('96가입)	34개 회원국 ('01가입)	41개 회원국 ('96가입)

-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1950년대 동서 냉전시대에 대(對)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에서 공산권의 국방 잠재력을 증강시킬만한 물자의 수출입을 통제하면서 등장한 제도입니다. 이후 UN안보리결의 1540호를 통해 국제 규범화되었으며, 각국은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수출통제를 위반한 기업·대학·연구소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각국의 자체 거래부적격자 목록에 등재되어 무역제한, 대외이미지 실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최근 UN은 북한, 이란 등 WMD 확산 우려국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채택하는 등 그 중요성은 더욱더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전략기술 수출관리

- 최근 IT기술의 발전, 국가간 인적교류 확대 등에 따라 전략기술 확산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기술의 경우 수출(export)의 개념을 이전(transfer)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에 의한 전략기술 수출 외에 전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또는 교육, 훈련 등 구두·행위를 통한 외국/외국인으로 전략기술의 무형적인 이전도 허가대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른 허가대상 변경 >

구 분	종 전	변 경
대상기술	△특정업종 종사자가 제공하는 용역 △특허권 등 양도·실시권 허락 등	모든 형태 및 모든 방식의 전략기술의 이전
이전대상	거주자 → 비거주자	한국인→외국인 / 국내→외국

- 핵공급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
-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 Australia Group) :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미사일 관련 통제
- 바세나르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 재래식 무기·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

## ○ 제2장. 전략기술의 이전관리

### ■ 전략기술 무형이전관리 지침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는 대량과괴무기와 관련된 제품보다는 이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전략기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략기술의 무형이전(ITT,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관리를 위한 최적관행지침을 채택하였습니다. 최적관행지침에서는 전자매체를 통한 기술자료의 이전과 구두, 행위를 통한 기술지원을 할 경우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기술 무형이전의 유형 >

- a) 전자 매체(이메일,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등) 또는 전화 및 팩스 등을 통한 기술자료의 전송
  - \* “기술자료”는 디스크, 테이프, ROM(읽기전용기억장치)와 같은 매체 또는 다른 매체에 쓰여져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청사진, 계획, 도표, 모형, 공식, 공학 설계도 및 규격서, 매뉴얼 및 지침서 등
- b) 구두 및 직접전달에 의한 기술지원
  - \* “기술지원”은 교습(instructions), 기능훈련(skills), 트레이닝(training), 작업지식(working knowledge), 컨설팅서비스(consulting service) 등

## ● 허가대상 기술이전의 범위

-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지침을 반영하여 허가대상 기술이전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술보유자(기술 처분 권한을 가진 자 포함)가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할 때에만 기술이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략기술 관리제도에서는 대가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에게 전략기술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교육, 연수, 자문,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한 기술이전 및 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해외로 보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허가대상 기술이전의 범위 >



■ 허가제의 대상기술

○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

- 신문, 공개서적, 잡지, 카탈로그, 등에 의하여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
- 학회지, 공개특허정보, 공개심포지엄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입수 가능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
- 소스코드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래
- 학회발표용의 원고나 전시회 등에서의 배포할 자료의 송부, 공개된 잡지에의 투고 등 당해기술을 불특정 다수인이 입수 또는 열람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전 행위

○ 기초과학연구

- 자연과학분야에 있어서의 현상에 관한 원리의 구명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자 이론적 또는 실험적 방법에 의해 행해지는 것. 다만, 비공개적인 연구활동과 특정 제품의 기술적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은 기초과학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학에서의 연구 종사자(교수, 연구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연구. 다만, 정부 등 외부기관(기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연구활동의 경우 예외대상이 아닙니다.

○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수출통제 제외 대상이므로, 해외출원을 위해 타국가 특허청에 기술자료를 등록하는 행위는 수출통제 이행대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PCT 국제출원과 같이 한국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16개월 이내에 영어 번역문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행위도 수출통제 이행대상이 아닙니다.

○ 수출 허가된 품목의 설치, 운용, 유지(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물품(제품)의 수출허가는 당해 제품의 설치, 운용,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도 동시에 허가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물품 및 S/W의 수출에 부가되는 기술이나, 유지·보수 기술 또는 프로그램이 당초 수출된 기능이나 특성면에서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허가 대상입니다

## ○ 제3장. 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방법

### ■ 전략기술해당여부 확인

-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제도 이행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략기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략기술이 고시되어 있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전략기술 확인지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전략물자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사전관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전략기술의 경우 수출허가 심사 시 전문기관의 사전관정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출허가가 필요 할 경우에는 사전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경우 등급(AA등급 이상)에 따라 자가관정이 가능합니다.

### ■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이용한 확인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하시면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고시된 전략물자·기술을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자신의 보유기술과 자세히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한 확인법 (예시) >

#### ① 시스템 접속

#### ②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 클릭

#### ④ 기술사양(통제사양) 확인

2B219 (NR3.B.3)	고정형 또는 이동형, 수평형 또는 수직형에 관계없이 다면 원심벨트식 머신으로 다음의 특성을 갖는 것
2B219.a	a. 600mm 이상 길이의 유연회전자를 벨트식하기 위한 원심벨트식 머신으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윙(swing) 또는 저널(journal) 직경이 75mm를 초과하고</li> <li>2. 0.9~23kg의 무게용량과</li> <li>3. 5,000rpm을 초과하는 벨트식 속도를 갖는 것</li> </ol>
2B219.b	b. 공동(空洞)실린더 회전자의 벨트식을 위해 설계된 원심분리 벨트식머신으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널(journal) 직경이 75mm를 초과하고</li> <li>2. 0.9~23kg의 무게용량으로</li> <li>3. 장류 평균형이 원반당 0.01kg×mm/kg 이하다 되도록 벨트식할 수 있는 기계</li> <li>4. 벨트 전동 타입의 것</li> </ol>

#### ③ 별표 2,3 이중용도품목, 군용물자품목 클릭

●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통한 확인

-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https://k-duals.yestrade.go.kr/systemInfo.do>)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략기술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연구 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한 후 간단한 기술사양 확인만으로 전략기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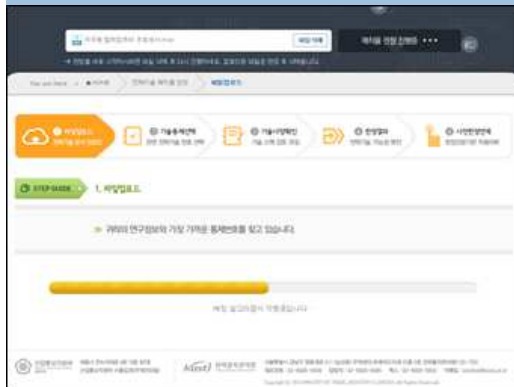


<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통한 확인법 (예시) >

① 시스템 접속(Yestrade→매치율 시스템)

② 연구정보 파일 업로드

### ③ 매칭알고리즘 작동



### ④ 통제번호 선택



### ⑥ 전략기술 가능성 제시



### ⑤ 기술사양 확인



### <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프로세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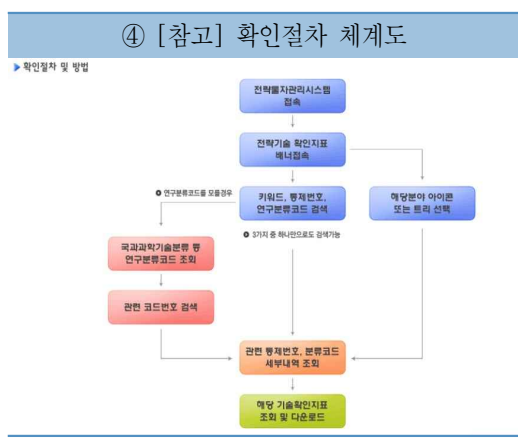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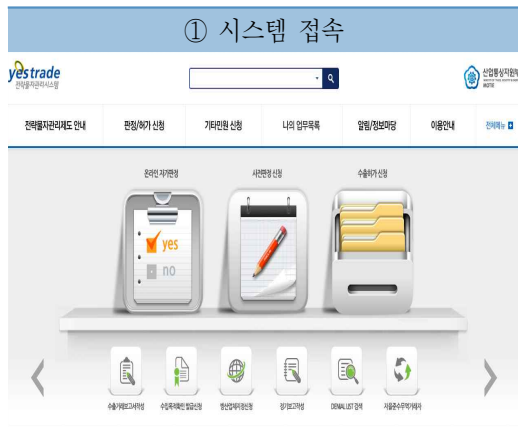
▶ 전략기술 확인지표를 통한 확인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키워드와 보유중인 기술에 대해 상호 일치하는 키워드가 없을 때 또는 보유중인 기술의 국가기술분류체계(국가과학기술분류코드, 산업기술분류코드 등)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기술이 전략기술과 어느 정도 근접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략기술 확인지표란 >

전략기술 확인지표란 기술의 융·복합 추세, 기술 적용가능 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의 통제사양 외에 전략기술과 관련성 있는 추가 핵심지표를 연계함으로써 실제 연구개발 현장에서의 연구테마와 전략기술과의 이질적인 요소를 완화하고 연구자가 기술 확인에 필요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발된 지표입니다.

< 전략기술 확인지표를 통한 확인법 (예시) >



## 온라인을 통한 사전판정 신청

- 보유중인 기술 및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사전판정기관의 공인된 판정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또는 작성서류 : 사전판정신청서, 매뉴얼·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기술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일체
  - 사전판정 소요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www.yestrade.go.kr](http://www.yestrade.go.kr) 접속 ≡ 사전판정 신청 ≡ 사전판정 ≡ 사전판정신청서 작성 / 전송

### < 사전판정 신청방법 (예시) >

#### ① 시스템 접속 ≡ 사전판정 신청 클릭

#### ② 사전판정 메뉴 선택하여 클릭

#### ④ 작성단계에 따라 작성 및 신청서 작성/전송

#### ③ 사전판정 시작하기 클릭



기술정보	기술명 *	초분광영상처리를 통해 해석된 작물 생장 정보 관리 및 원격 모니터링 앱 개발
	통제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기술내용 *	시설원예작물 재배환경에서 실시간 초분광영상 이미지를 기반으로 병해충 발현 상태 및 종류, 과실의 손상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배자를 위한 원격 감시 및 경보용 모니터링 앱 기술 개발 과제로서 국제공동연구기관에서 초분광영상 이미지를 이용하여 농업 ICT융합을 위한 원격 감시 및 경보용 모니터링 앱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주요용도 *	원격 모니터링 앱을 통해서 온실 재배자에게 작물상태 및 작물재배환경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농업 컨설턴트 또는 재배자가 작물의 생육 상태를 사전에 원격에서 진단할 수 있고 병해충 상태를 조기에 예찰할 수 있음
	기술특성 *	온실 내외부 환경정보 등을 분석, 시각화 제공 기술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환경 및 작물 생육 모니터링 정보의 저장 관리 기술
	응용분야 *	농업응용분야로서, 시설재배환경모니터링, 수출작물 사전 검사, 노지작물병해충경보 예찰 시스템 등의 작물생육환경 감시 분야에서 활용가능
	기술수준 *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앱 기술로서, ICT 유관기업/기관의 일반적인 기술 활용으로 농업 ICT 융합에 적합한 수준의 기술임
	기타사항	본 기관의 모바일앱기술/사용자인터페이스기술을 활용하여 농업ICT융합을 통한 농업생산성 및 농민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및 관련제품	제품명 *	없음
	사용용도 *	없음

- \* 기술명 : 기술 또는 프로젝트, 계약명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초분광영상처리를 통해 해석된 작물 생장 정보 관리 및 원격 모니터링 앱 개발
- \* 통제번호 : 필수기재 항목은 아니나 신청하고자하는 기술 및 이와 관련된 품목의 통제번호를 알고 계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술내용 : 신청하고자하는 기술의 개요 및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시설원예작물 재배환경에서 실시간 초분광영상 이미지를 기반으로 병해충 발현 상태 및 종류, 과실의 손상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배자를 위한 원격 감시 및 경보용 모니터링 앱 기술 개발 과제로서 국제공동연구기관에서 초분광영상 이미지를 이용하여 농업 ICT융합을 위한 원격 감시 및 경보용 모니터링 앱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 \* 주요용도 : 신청 기술의 주요 용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원격 모니터링 앱을 통해서 온실 재배자에게 작물상태 및 작물재배환경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농업 컨설턴트 또는 재배자가 작물의 생육 상태를 사전에 원격에서 진단할 수 있고 병해충 상태를 조기에 예찰할 수 있음
- \* 기술특성 : 신청 기술의 주요 특징 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온실 내외부 환경정보 등을 분석, 시각화 제공 기술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환경 및 작물 생육 모니터링 정보의 저장 관리 기술
- \* 응용분야 : 신청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 및 향후 활용이 예상되는 분야 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온실 내외부 환경정보 등을 분석, 시각화 제공 기술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환경 및 작물 생육 모니터링 정보의 저장 관리 기술



## ○ 제4장. 전략기술 수출허가 이행절차

### ■ 수출허가 이행대상 필요여부 판단절차



### ■ 기술이전(수출) 형태별 허가제도

○ 전략기술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술이전 시 마다 허가를 받는 개별허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이전 행위(예 : 회의 개최, 이메일 발송 등)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략기술(물자포함) 관리를 위한 내부 자율관리체제(CP)를 구축하여 정부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한 경우 개별허가가 면제되며 사후보고로 갈음됩니다.

#### < 기술이전 형태별 수출허가 >

계약유무	유	무
CP유무	-	CP미보유 CP보유(AA이상)
허가유형	개별허가 * 허가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이전 행위 (예 : 회의 개최, 이메일 발송 등)는 추가적인 허가 불필요	
사 례	특허권 양도, 국제공동연구, 플랜트 건설 등	외국인과의 비공개 회의, 해외지사와 자료 교류 등

수출허가 신청절차

- 앞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이전(수출)하고자 하는 기술이 전략기술인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허가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yestrade.go.kr](http://www.yestrade.go.kr) 접속 → 수출허가 신청 → 수출허가 → 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 전송

< 수출허가 신청방법 (예시) >

**① 시스템 접속**

**② 수출허가신청 클릭**

**③ 수출허가 메뉴 선택하여 클릭**

**④ 작성단계에 따라 작성 및 신청서 작성/전송**

## ● 수출허가 신청서류

- 전략기술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시에는 허가 신청서 외에 수출자 서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신청서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 <수출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1부
- ②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 ③ 수출자 서약서 1부
- ④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 ⑤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세부 서식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참조

- 수출신용장 및 (가)계약서 등 계약에 준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각각 1부씩 스캔하여 해당 파일을 Yestrade에 업로드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만, 수출대상 국가가“가”지역<sup>5)</sup>이거나, 일부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 기술을 해당 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 <수출허가 신청서류의 면제>

- 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대상품목을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및 핵공급국그룹 소관 전략물자를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5)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군

<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기술 명세서 작성 예시 >

별지 제1호의3서식]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기술 명세서**

			허가신청번호	
① 기술 명칭	내방사선 카메라 생산 기술			
② 기술의 형태	구 분	산 업 재 산 권	기술용역 또는 노하우	기술정보 및 자료
	상 세 내 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생산 관련 도면 이전
* 기술의 형태가 복수인 경우 해당란에 각각의 상세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산권인 경우에는 상세내용에 양도 또는 실시권 설정(허락) 중 하나를 선택하고, 산업재산권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이전의 형태	구 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한 이전	기록매체 또는 정보처리 장치를 통한 이전
	상 세 내 용	이메일 및 팩스 전송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이전의 형태가 복수인 경우 해당란에 각각의 상세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술의 내용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고방사능 환경에서도 작동저하 없는 내방사선 카메라용 반도체 처리 절차 등			
⑤ 본기술에 의해 개발, 제조, 사용되는 품목의 정보	품 명	규 격	용 도	통 제 번 호
	내방사선 카메라	100mm x 100mm x 229.5mm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에 활용	6A203, c
⑥ 계약 기간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없음			
⑦ 대가 및 수취방법 (대가 있는 경우)	구 분	금 액	수 취 방 법	수 취 기 간
	상 세 내 용	10만달러	계좌이체	일시불
⑧ 기술도입자 개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중국지사가 기술도입자로서 1990년대 가전제품 관련 업체였으며 이 후 원자력 관련 품목 제작회사로 업종을 변경한 바 있음 홈페이지 : <a href="http://www.westinghouseuclear.com">www.westinghouseuclear.com</a>			
⑨ 기술도입 목적 및 사용 등	중국에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내 고방사능 환경에서의 운전환경 모니터링			
기타 사항				

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수출허가 소관부처

- 수출허가를 담당하는 부처는 품목(기술)별로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나뉘어 있습니다.

<부처별 소관품목·기술>

구 분	관련법	수출허가기관
일반 산업용 물자 및 기술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반 방산 물자 및 기술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원자력 전용물자 및 기술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방산물자 및 국방기술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방 위 사 업 청

### ● 수출허가 소요기간

- 수출허가 소요기간은“가”지역은 5일, 그 외 국가는 15일입니다. 다만,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 간 협의 등에 소요되는 일수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 수출허가 유효기간

- 계약에 따라 기술수출계약서가 체결된 경우에 전략기술의 허가 유효기간은 계약서 상의 기술이전 기간입니다. 별도의 계약없이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년입니다.

### ● 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 다음과 같이 수출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단순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출허가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해당 기술의 최종 목적지(국가) 및 최종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 해당 기술의 사용용도가 변경된 경우
  - 해당 기술 이외의 통제번호가 다른 기술이 추가된 경우

### ● 수출허가 면제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략기술 수출허가가 면제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 26조제3항, 전략기술별 허가면제제도 운영 현황 참조)

- ①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 ②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때 대가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 ③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동일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 ④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 ● 불법수출 시 법적 처벌

- 7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3배) 이내의 벌금<sup>6)</sup>
-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 8시간 이내의 교육명령

### ● 비법규적 제재

- 국제 우려거래대상자(Denial List)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국가 간 공유 및 대외에 공개되어 해외에서의 기술도입 등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 수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 이내의 벌금이 적용

< 전략기술별 허가면제제도 운영 현황 >

구 분	비CP기업	CP기업		
		A	AA이상	
공통	(허가면제)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고시 제26조제3항제4호)			
별표 3	-			
별표 2	W A	초민감/민감	(서류면제)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고시 제21조제8항제1호)	
		초민감/민감 외	(허가면제) WA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고시 제26조제3항제1호)	
			(허가면제) WA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계약기간 중 받을 기술료의 총액이 미화 1만불 미만인 경우(고시 제26조3항제2호)	
			(허가면제) 동일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고시 제26조3항제3호)	
			-	(허가면제) '가'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사용자가 △수출자의 최대주주, △해외 본점,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한함), △수출자의 해외 지점(수출자가 본점인 경우에 한함)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고시 제80조, 별표19 CP특례)
	-	(서류면제) '나'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위에 해당될 경우(고시 제80조, 별표19 CP특례)		
	-	(허가면제) 계약 체결없이 수출하는 경우(단, 실적보고 필요) (고시 제80조, 별표19 CP특례)		
	N S G	공통	(서류면제) "가"지역 외 NSG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단, 수출자서약서, 최종 사용자 서약서만 면제) (고시 제21조제8항제2호)	
		제10부	-	
		제10부 외	(허가면제) 동일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고시 제26조3항제3호)	
(서류면제)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고시 제21조제8항제1호)				
-			WA와 동일하게 적용	
-	WA와 동일하게 적용			
A G	(허가면제) 동일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고시 제26조3항제3호)			
	(서류면제)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고시 제21조제8항제1호)			
	(서류면제) "가"지역 외 AG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단, 수출자서약서, 최종 사용자 서약서만 면제) (고시 제21조제8항제2호)			
	-	WA와 동일하게 적용		
-	WA와 동일하게 적용			
MTCR	AG와 동일 (단, "가"지역 외 MTCR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서류면제 비 적용)			

## ○ 제5장. 전략기술 자율관리

### ■ 전략기술 자율관리체제

- 물품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특성 상 전략기술의 관리는 물품에 비해 더욱 어려우므로 사실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이 전략기술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도 전략기술에 대한 자율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한 기관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여 수출허가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술 자율관리체제는 조직, 규정, 최고경영자의 준수 의지, 거래심사절차, 출하관리, 교육, 감사, 문서관리, 보고, 정보보안체제 등 9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 전략기술 자율관리체제 구축요건

#### ① 관리조직 및 규정

- 조직 : 기관의 규모에 맞게 담당부서(타 업무 겸임가능) 내지 전담부서를 구성하여야 하며 담당자 등 관련 인원에 맞는 업무분장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규정 : 전략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운영세칙 및 업무 매뉴얼 등으로 내부 절차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최고경영자의 준수 의지

- 책임자 : 최고경영자 또는 담당 임원 등 전략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책임자가 적절히 지정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부총장과 같은 학교운영의 책임자가 자율관리체제의 책임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이행선언 : 구성원 전체에 대해 이메일, 기관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의 제도 이행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야 합니다.

### ③ 거래심사

- 전략기술 여부확인 : 규정과 세부지침에 따라 전략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전략기술 여부확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기관 내부 DB화 하여야 합니다.
- 수출허가 : 기술이전(수출) 절차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가 중단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절차, 거래행위 발생시마다 거래부적격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 등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 < 연구단계별 관리절차(예시) >

연구계획서 입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기술 관리의 기본사항으로 연구개발 하려는 기술과 통제기술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고, 기록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보유)하는 기술정보가 통제대상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통제대상이라면 이를 적절한 형태로 표시</li> <li>- 전략기술 관련자료는 일정기간 보관하며, 전략기술 사전점검표 작성</li> </ul> </li> </ul>
중간점검~ 최종보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기술 사전점검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피드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획서 단계에서 전략기술이 아니었으나, 결과보고 단계에서 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li> </ul>
기술이전 (수출 포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용도(End-Use)와 최종사용자(End-User)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판정 신청(최종확인)</li> <li>- 전략기술 해당 시 수출허가 신청</li> <li>- 기술제공 시 계약서상의 기술과 실제로 제공되는 기술의 동일여부 확인</li> <li>- 국내이전 시에도 전략기술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으로 기술전수기관의 향후 불법이전 사전예방(권고)</li> <li>-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기술이전 금지 또는 기술이전시 사전통보 및 협의요구를 명문화</li> </ul> </li> </ul>

< 공동 및 위탁연구의 각 단계별 대응방안 >

단계	내용
계획서 검토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하려는 기술과 전략기술 간의 관련성 여부 확인</li> <li>• 공동 및 위탁연구의 주체가 거래부적격자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또는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확인</li> <li>• 필요시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략기술 불법이전 방지 사전교육 실시</li> </ul>
계약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서 검토단계에서 확정된 계약자 외에 추가적으로 참여자(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거래부적격자 등재여부 재확인</li> <li>• 공동연구대상 기관과의 전략기술 정보 상호 이전시 소속 국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등 명문화</li> <li>• 공동연구중인 기술이 전략기술일 경우, 제3국에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시에 정부의 허가를 받을 것을 명문화</li> <li>• 공동연구결과물을 이용하여 제품 상용화 및 해외판매시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명문화</li> </ul>
연구성과 사후관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결과로 생성된 제품의 수출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적절한 내부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필요</li> </ul>

※ 산·학연구(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공동연구 등도 포함)는 기술의 제품화를 염두해두고 연구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과학분야”의 연구개발로 볼 수 없으므로 통제대상에 포함

< 국내외 연수 또는 세미나 참석 시 대응방안 >

단계	내용
발표자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하고자 하는 발표내용 중 통제대상 기술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li> </ul>
참석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교육과정에 외국인이 참석하는지 확인</li> </ul>
수출허가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내용 중 전략기술 관련 내용이 있고 외국인 참석자가 있는 경우 발표자료 송부 전에 수출허가 신청</li> </ul>

④ 출하관리

- 물품 등의 출하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서류 상 품목과 실제 품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 시제품에 대한 관리, 민감한 실험장비 등의 반출이 위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⑤ 교육

- 기관 내 인식도 제고를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략기술의 관리에 있어 특히 개개인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기관내 교육대상 및 내용(예시) >

구 분	내 용
시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채용 직원교육</li> </ul> </li> <li>• 수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연초, 신규 기술거래를 시작할 때, 외부에서 매수 등의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대규모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 관련규정의 제개정시</li> </ul> </li> </ul>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임직원(외부인·외국인 포함)</li> </ul>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내 전략기술 현황 및 전략기술 불법유출 방지교육</li> <li>• 기타 경영진 판단하에 교육하여야 할 내용</li> </ul>

### ⑥ 감사

- 규정, 절차 등에 따라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주기적인 감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미비점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 ⑦ 문서관리

- 현행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관리제도 준수에 관한 각종 서류들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http://www.yestrade.go.kr))을 통해 처리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 및 보관할 서류>

- 전략기술 사전판정서 및 수출허가서
- 그밖에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에 관한 서류

⑧ 보고

- 제도 위반사항에 대해 기관 내 보고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도 확립되어야 합니다.

⑨ 정보보안체계

- 정보보안이란 인적보안, 물리적보안, 절차적보안, 정보통신(IT) 보안 등 사내 정보의 외부 유출을 관리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보안을 말합니다.
- 전략기술 자율준수체제에서는 기업의 규모 및 등급에 따라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연구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시스템 및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거래부적격자 여부 등 신원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 제6장. 전략기술 관리 Best Prac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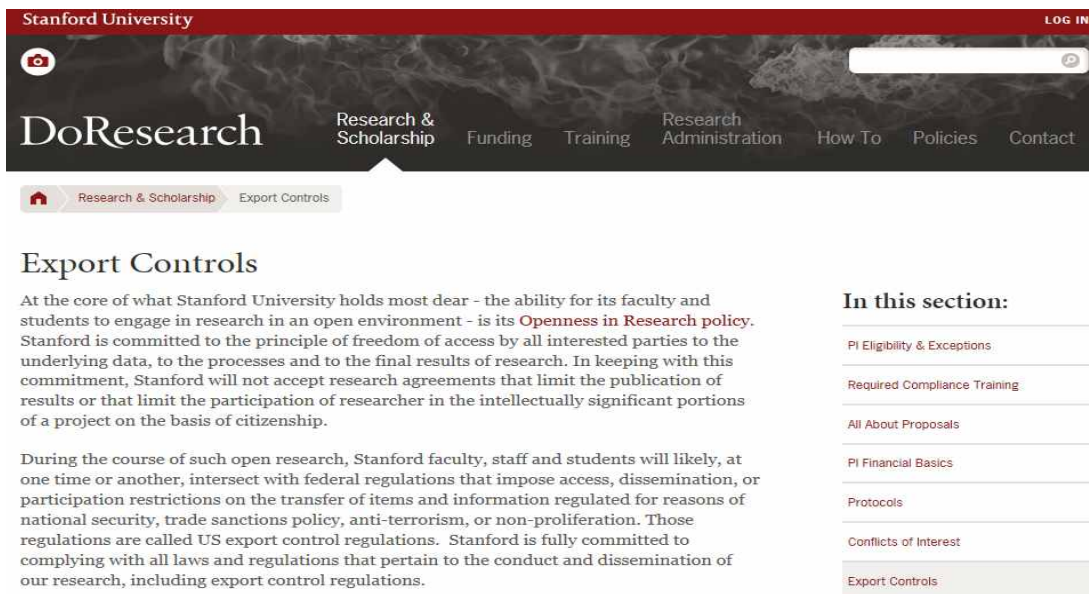
### 1. 美 Stanford 대학

#### ■ Research Policy Handbook

- Stanford 대학은 美 수출통제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기술이전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학내 연구정책(Research Policy)에 반영하여 Research Policy Handbook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핸드북은 총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사무실, 위원회 및 연구 지원 패널, 학술 정책, 후원 프로젝트 관리의 재정적 측면, 헌신과 이해의 갈등, 지적 재산권, (주위)환경의 보전 및 안전, 연구의 윤리적 측면, 연구에서의 실험동물, 비(非)교수 연구 임명, 후원 프로젝트 관리의 또 다른 측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tanford University는 학내 연구정책 핸드북(Research Policy Handbook; RPH)을 통해 수출통제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 수출통제정책에 관한 사항(RPH 8.1~8.7), 연구의 개방정책에 관한 사항(RPH 1.4), 교원 정책에 관한 사항(RPH 4.1), 연구계약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RPH 1.8)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 Stanford University 수출통제 웹사이트 >



The screenshot shows the Stanford University DoResearch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Research & Scholarship, Funding, Training, Research Administration, How To, Policies, and Contact. The current page is 'Export Controls' under 'Research & Scholarship'. The page content includes a paragraph about Openness in Research policy and a list of links under 'In this section:'.

**Export Controls**

At the core of what Stanford University holds most dear - the ability for its faculty and students to engage in research in an open environment - is its **Openness in Research policy**. Stanford is committed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ccess by all interested parties to the underlying data, to the processes and to the final results of research. In keeping with this commitment, Stanford will not accept research agreements that limit the publication of results or that limit the participation of researcher in the intellectually significant portions of a project on the basis of citizenship.

During the course of such open research, Stanford faculty, staff and students will likely, at one time or another, intersect with federal regulations that impose access, dissemination, or participation restrictions on the transfer of items and information regulated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trade sanctions policy, anti-terrorism, or non-proliferation. Those regulations are called US export control regulations. Stanford is fully committed to complying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that pertain to the conduct and dissemination of our research, including export control reg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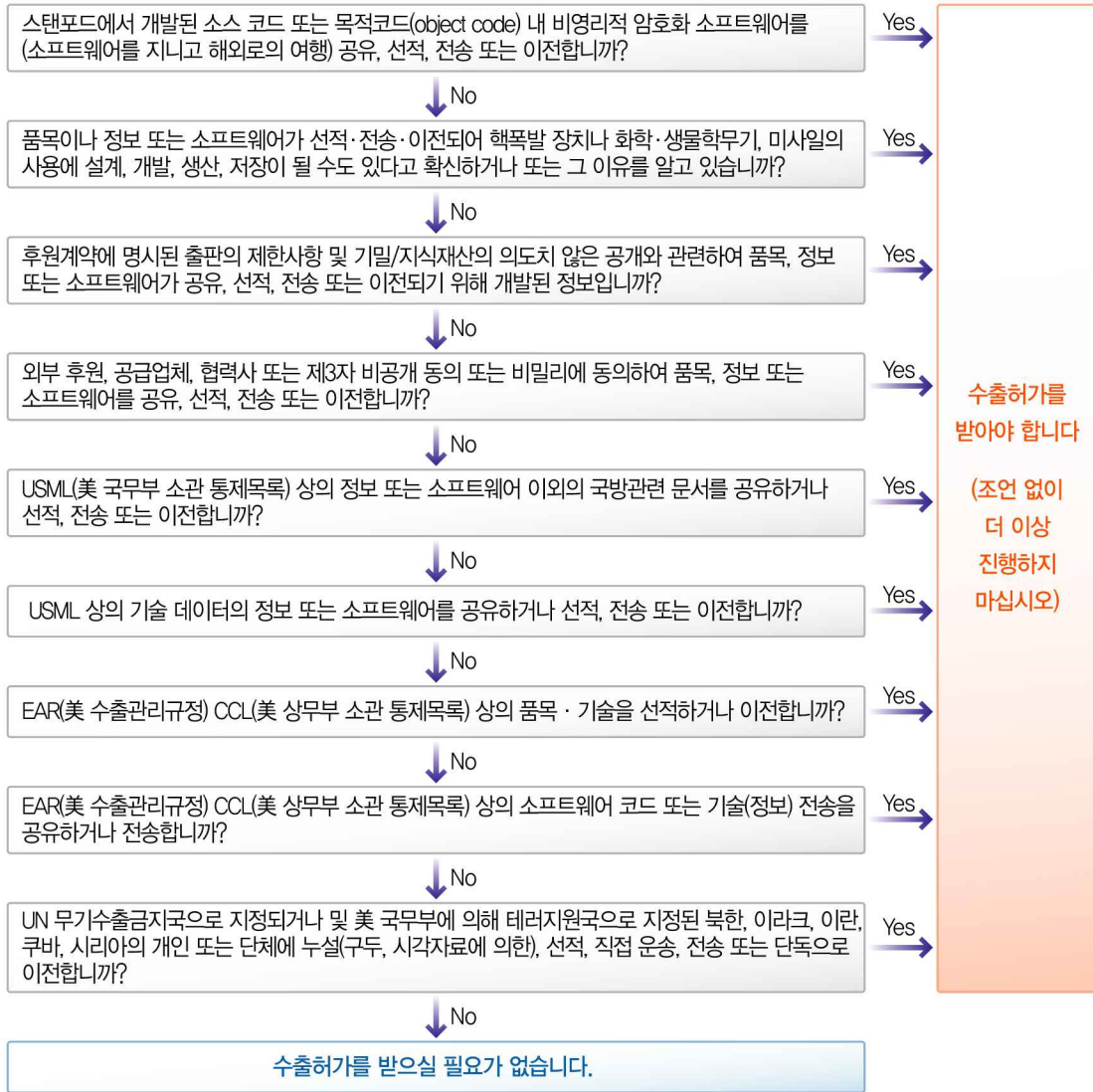
**In this section:**

- PI Eligibility & Exceptions
- Required Compliance Training
- All About Proposals
- PI Financial Basics
- Protocols
- Conflicts of Interest
- Export Controls

Technology Decision Tree

- 기술이전 활동이 수출통제 이행대상인지 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차례 질문을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태의 질문지로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질문 단계별로 최적의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Technology Decision Tree >



\* 상기 Decision Tree는 수출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안내자료 이며, 특정행위에 따른 조치내용은 법률관계자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2. 美 NASA

### Export Control Compliance : Part of the NASA Mission

- NPD 2190.1, Section 1.a.
  - "It is NASA policy to ensure that exports and transfers of commodities, technical data, or software to foreign persons ar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and Administration and NASA policy."  
(외국인에 대한 원자재, 기술 자료 또는 소프트웨어의 수출 또는 이전은 NASA 방침에 따라 미국의 수출통제법, 규정 및 NASA 규정에 따른다.)
- NPR 2190.1, Section P.1.
  - "We want to maximize the benefits of our international efforts while ensuring that we comply with U.S.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This is the personal responsibility of each employee."  
(NASA는 미국의 수출통제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을 최대화해야 한다. 이는 직원 개개인의 책임이다.)

### 기술통제 절차서(Procedural Requirement)

- NASA는 수출 통제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해 Procedural Requirement를 제정하여 모든 NASA 직원과 외국 국적의 개인, 단체에 품목, 정보 또는 기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NASA의 지원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통제 프로그램은 예외 및 면제 자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출 통제 요구사항의 준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구성
  - 기술통제 절차서는 크게 수출 상담 및 NASA 수출 통제 프로그램 교육 및 훈련, 감사, 수출 통제 프로세스 수출관리규정(EAR) 절차, 국제 무기 수출규정(ITAR) 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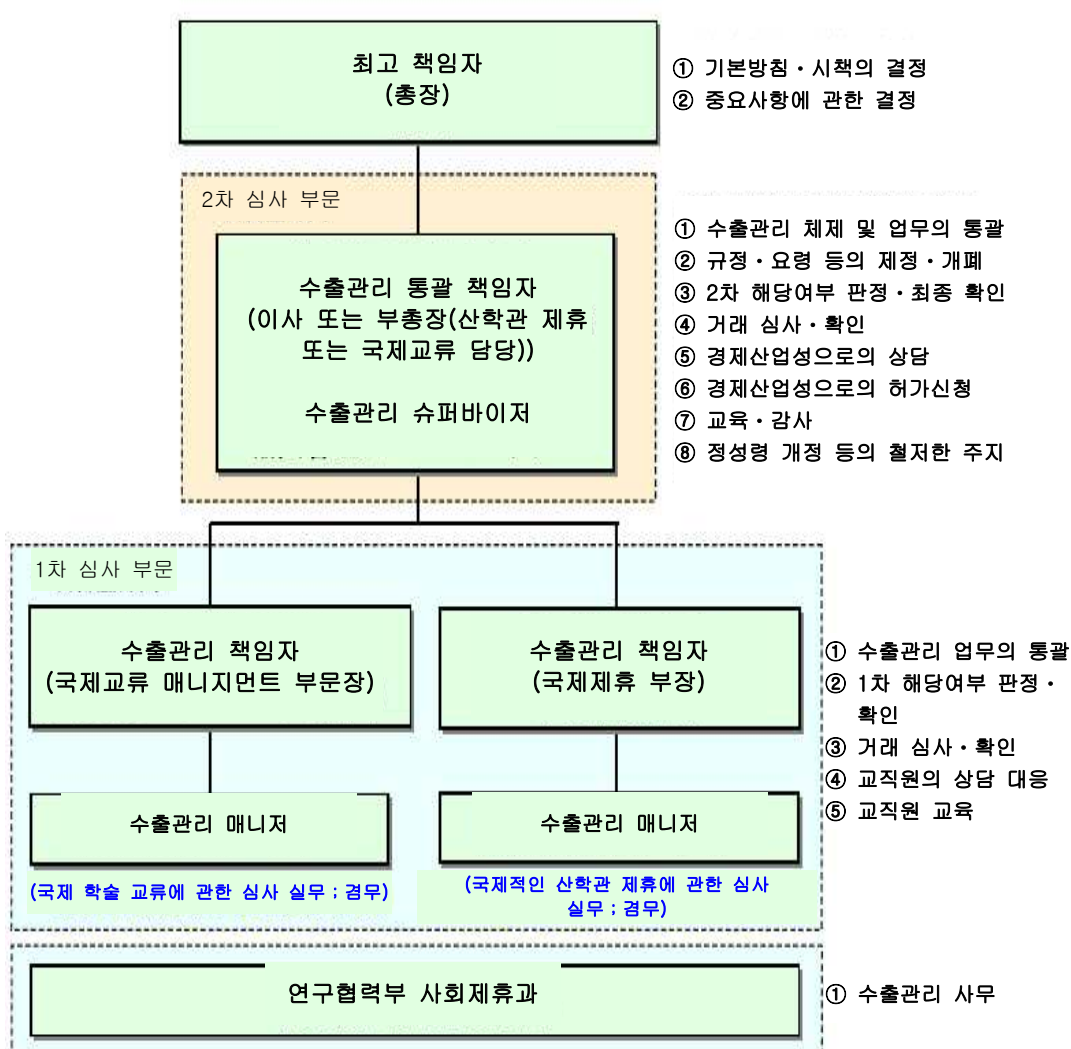
○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머리말	기술통제 절차서의 목적, 적용, 해당 문서 및 양식, 측정/검증 소개
Responsibilities	Export Control에 대한 NASA 임직원의 책임
NASA Export Control Process	품목 관할 및 분류, 라이선스 요구사항, 기술이전 통제계획, 보고
EAR Procedures	수출관리규정 소개, 라이선스 예외 등
ITAR Procedures	국제 무기 수출규정 소개, 수입, 라이선스 면제 등
NASA Export Control Program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훈련 프로그램 소개, 내용 등
NASA Export Control Program Auditing	프로그램 감사에 대한 목적, 의무, 책임, 최종 보고서 등
Questions of Compliance and Violations	준수 위반에 대한 질문
APPENDIX	정의, 참조, NASA 수출절차 템플릿, 기술이전 관리계획, NASA 기초연구 지정 지침

### 3. 日 나고야 대학

- 나고야 대학은 2009년에 안전보장 수출관리 규정을 책정하는 동시에 대학 내부 체제를 정비하여 운용을 개시했습니다. 연구협력부에서 기본적인 수출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 학술교류에 관한 부문과 국제 산·학·관 제휴에 관한 심사업무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차적인 전략기술 해당여부의 자체심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총장급 조직에서 수출관리를 총괄하면서 2차적인 거래심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비교적 세밀한 수출관리업무를 수행중인 것이 특징입니다.

< 나고야 대학의 수출관리 조직 >



4. 韓 KAIST

○ KAIST는 2011년 국내대학 최초로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내 전략기술 관리를 위한 절차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KAIST 내부 규정인 기술이전 실시 계약서 개정을 통해 수출시 전략기술의 해당여부를 확인 및 정부의 수출허가 허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기술이전과 관련된 업무 절차에 전략기술 판정 및 수출허가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이전시 전략기술 판정·허가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략기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KAIST 기술이전 업무절차>

기술이전 업무프로세스 - 전략기술 판정 및 수출허가 프로세스 추가



<KAIST 전략기술 관리 전산시스템 화면>



○ 제7장. 전략기술 무형이전 FAQ

< FAQ 목차 >

1. 전략기술 개요 및 통제예외
2. 기술이전 유형
- 3-1. 기업 (본사/지사)
- 3-2. 기업 (해외출장)
- 3-3. 기업 (외국인 관리)
- 3-4. 기업 (외국 기술이전)
- 4-1. 대학/연구기관 (발표 및 토론)
- 4-2. 대학/연구기관 (외국인 학생 교육)
- 4-3. 대학/연구기관 (허가예외)
- 5-1. 허가신청 시 주의사항
- 5-2. 허가신청 필요유무
6. 국적기준

< FAQ 세부 목차 >

1. 전략기술 개요 및 통제예외

- 1-1 “기술”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1-2 모든 기술은 통제되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1-3 설치, 운용,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1-4 전략물자의 개발, 생산, 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1-5 비록 전략기술에 해당하나 이전된 단순 정보만으로는 전략물자를 개발, 제조,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수출로 간주 됩니까?
- 1-6 일반에 공개된 기술과 유사 또는 대체 가능한 기술의 경우 공개된 기술로 간주 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1-7 통제기준에서 품목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기술제어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파악해야 하는지요?
- 1-8 특허출원을 위해 제출하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는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요?
- 1-9 전략기술 무형이전(ITT)에 대한 수출허가 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 1-10 전략기술 수출허가 신청 서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 기술이전 유형

- 2-1 허가대상 기술이전의 유형은?
- 2-2 해외로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전송할 때마다 허가가 필요합니까?
- 2-3 기술을 노트북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2-4 서버를 통해 전략기술 정보를 저장하는 것 또한 기술 이전인가요?

### 3-1. 기업 (본사/지사)

- 3-1-1 원천 기술을 보유한 모기업으로 모기업의 기술수준과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의 전략기술을 재이전하는 경우도 전략기술 수출로 간주 됩니까?
- 3-1-2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전략기술 관련 자료를 보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3-1-3 본 회사는 한국에 있는 일본 자회사로서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 기술자료 전달 및 기술자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동 기술자료 및 기술자의 기술지원 내용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라 통제되는 전략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략기술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3-1-4 본사에서 지사로 기술 이전을 했을 때, 그 기술로 지사가 상품을 개발해서 해외로 판매할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3-1-5 전략기술의 이전에 있어서 개인간/법인간 거래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한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A법인에 소속된 개인 B가 한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또 다른 법인 C에 소속된 외국인 D에게 전략기술을 이전할 경우,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 간 거래인지요?
- 3-1-6 본문 참조

### 3-2. 기업 (해외출장)

- 3-2-1 우리나라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외 출장을 나가있는 경우, 이 직원에게 전략기술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3-2-2 해외 출장시 가지고 나가는 기술 자료를 해당 출장자만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 3-2-3 우리나라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A국 현지법인에 출장을 나가 그 곳에서 설계를 작성하여 B국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합니까?

### 3-3. 기업 (외국인 관리)

- 3-3-1 본 회사의 R&D부서에는 중국, 인도 등에서 온 외국인 연구원이 있으며, 그들이 다루는 기술 중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통제되는 전략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3-3-2 A국 기업과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A국의 기술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합니까?
- 3-3-3 우리 회사 직원의 일부는 외국인입니다. 사내에서 전략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우리 회사에 재직된 외국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3-3-4 외국인을 고용할 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3-4. 기업(외국 기술이전)

- 3-4-1 외국에 있는 조선회사와 기술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을 근거로 관련 기술자료 이전 및 기술자 파견을 통하여 기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3-4-2 우리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략기술을 해외 기업에 소속된 특정 연구자에게 이전할 경우 허가의 상대방은 해외 기업인가요 아니면 특정 연구자 개인을 대상으로 받아야 하나요?
- 3-4-3 전략기술에 해당되는 내용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 및 이메일 발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매번 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 3-4-4 수출허가를 취득하여 외국에 납입한 전략물자에 대한 수리(공구교환)를 위한 기술을 외국에 제공할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합니까?
- 3-4-5 사전수출허가를 받고 일본 → 중국 전략물자 판매를 중계무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한 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 중국 고객 쪽에서 '기술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기술보고서는 일본에서 작성하고, 한국에서 번역하여 중국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혹시 일본에서 번역까지 완료하여 중국으로 기술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가요?

#### 4-1. 대학/연구기관 (발표 및 토론)

4-1-1 본인은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비공개 회의에서 전략기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허가신청은 개인자격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학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요?

4-1-2 저는 연구기관에서 신소재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이번에 A국가에서 거행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특정 신소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그 곳에 참석한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과 이에 대해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전략기술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4-2. 대학/연구기관 (외국인 학생 교육)

4-2-1 대학에서 석 박사 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전략기술을 이전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4-2-2 대학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기술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4-3. 대학/연구기관 (허가예외)

4-3-1 우리 연구소가 보유한 전략기술 또는 전략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S/W를 해외 A기업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기술보유 주체가 아직 우리 연구소이기 때문에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4-3-2 우리 연구소에서 기술이전하고자 하는 행위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 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면제대상입니다. 이 경우, 우리 연구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수출(이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신청 후 정부로부터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 5-1. 허가신청 시 주의사항

- 5-1-1 전략기술에 대한 수출허가시 정부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 5-1-2 자가관정을 통해 전략기술임을 확인한 경우, 자가관정 결과로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5-1-3 전략물자 해당 암호화기술(5E002)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적용 가능한 허가면제 조항 2가지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합니까?

### 5-2. 허가신청 필요유무

- 5-2-1 회사의 홈페이지에 제품에 관한 기술의 세부 내용을 올리는 것도 기술 이전으로 간주하여 허가가 필요한가요?
- 5-2-2 고객에게 공급한 전략물자의 품질문제 등으로 고객과 논의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 5-2-3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품목의 계약을 위해 제품 카탈로그 전송, 제품설명회 개최 및 담당자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 6. 국적기준

- 6-1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복수국적자)이 전략기술을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 한국국적 기준으로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 6-2 전략기술을 복수국적자에게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1. 전략기술 개요 및 통제예외

## 1-1 “기술”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제품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에 필요한 특정 정보나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대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또는 기술 자료(Technical Data)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청사진, 도표, 모델, 공식, 설명서, 매뉴얼, 기술지도, 기능훈련, 컨설팅 서비스 등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이전되기도 합니다.

## 1-2 모든 기술은 통제되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및 3에 고시된 분야별 전략기술은 허가대상입니다. 다만, 일반에 공개된 기술과 교육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기초과학연구에 해당되어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기초과학연구란 특정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현상에 관한 원리규명을 주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이밖에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허가를 받아 수출된 전략물자(제품)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참고] 전략기술이란?

전략물자의 개발·생산·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략물자라는 용어에 전략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 (Development)	Design, Design research, Design analysis, Design concept, Assembly and testing prototype, Pilot production scheme, Design data, Process of transforming design a product, Configuration design, Design integration, Layout,
생산 (Production)	Production engineering, Manufacture, integration, Assembly(mounting), Testing, assurance, Construction, Inspection
사용 (Use)	operation, Installation(including on site installation), maintenance, Repair, Overhaul, Refurbishing

**1-3 설치, 운용,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통상적으로 제품의 판매 시에는 동 제품의 설치, 설치 후 운용 및 기타 품질보증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판매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 판매와 수반되는 일련의 기본적 활동들을 설치·운용·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제품)의 수출허가는 당해 제품의 설치, 운용,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도 동시에 허가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한편,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전략물자(제품)의 설치, 운용, 유지를 위한 기술이 이전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들이 단순 매뉴얼 형태로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일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전략물자를 취급하기 위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설치, 운용을 위한 기술인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전략물자의 개발, 생산, 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전략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 및 관련 절차, 당해 전략물자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명칭, 탑재위치 및 전략물자의 개발·생산에 필요한 필수 핵심 소재(혼합·화합물의 경우, 혼합비 등)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수치가 적힌 도면은 전략물자의 개발·생산·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략물자의 개발·생산·사용을 위한 기술 중에서도 단순 매뉴얼 수준(제품홍보 카탈로그 및 공개된 매뉴얼 수준)의 일반에 공개된 자료, 공정 과정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일 경우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 비록 전략기술에 해당하나 이전된 단순 정보만으로는 전략물자를 개발, 제조,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수출로 간주 됩니까?**

☛ 전략기술로 판정받은 기술이 이전된다면, 이전되는 기술의 수준과 범위와는 상관없이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1-6 일반에 공개된 기술과 유사 또는 대체 가능한 기술의 경우 공개된 기술로 간주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유사 또는 대체 가능 기술이라도 공개여부가 판단근거이므로 일반에 공개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개된 기술과 유사 또는 대체 가능하며, 당 업계에서 충분히 동일 기술을 재구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기술로 간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 또는 대체 가능 기술이 논문, 특허 등 공개기술로 입수 가능하지 않은 한, 전략기술 허가가 필요합니다.

**1-7 전략물자 중 소재의 사용 기술에 대한 의미 명확화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통제 목록의 1E201을 보면 「1A002, 1A202, 1A225부터 1A227까지, 1B201, 1B225부터 1B233까지, 1C002.b.3. 또는 b.4., 1C010.b., 1C202, 1C210, 1C216, 1C225부터 1C240 또는 1D201에 기술된 품목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기술제어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통제기준에서 품목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기술제어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파악해야 하는지요?**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문구는 큰 의미의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상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기술제어에 적용되는”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에 1E201의 통제문구에 “기술제어에 적용되는”은 별도의 특정한 기술의 특성을 지칭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E201의 통제문구는 「1A002, 1A202, 1A225부터 1A227까지, 1B201, 1B225부터 1B233까지, 1C002.b.3. 또는 b.4., 1C010.b., 1C202, 1C210, 1C216, 1C225부터 1C240 또는 1D201에 기술된 품목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의 의미는 하기의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 (Development)	Design, Design research, Design analysis, Design concept, Assembly and testing of prototype, Pilot production scheme, Design data, Process of transforming design data into a product, Configuration design, Design integration, Layout,
생산 (Production)	Production engineering, Manufacture, integration, Assembly(mounting), Testing, Quality assurance, Construction, Inspection
사용 (Use)	operation, Installation(including on site installation), maintenance, Repair, Overhaul, Refurbishing

### 1-8 특허출원을 위해 제출하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는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요?

☛\* 특허출원을 위해 특허출원 프로세스(출원, 보정, 거절 소명, 등록 등)를 진행하며 특허청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가 "특허출원을 위해 제출하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 범위에 해당됩니다.

### 1-9 전략기술 무형이전(ITT)에 대한 수출허가 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 국제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전략기술 무형이전(ITT\*)」 통제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ITT의 수출허가 법제화는 국제사회의 전략기술 통제강화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세계 무역환경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무역 안보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술수출기업의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ITT 등 전략기술 이전에 대한 강화된 법제는 우리 고유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호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ITT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란 이메일, 트위터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한 기술자료의 전송과 사람을 매개로 한 구두전달, 교육, 實演 등의 기술지원 행위를 뜻합니다.
- \* 전략기술 무형이전(ITT) 통제의 법제화는 UN안보리 결의안 1718호('06.10)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써 우리나라는 UN안보리에 ITT 법제화 계획을 '06.12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 ITT 관련 허가제도 운영방안

- (기본방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운용하되,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기술교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
- (통제제외) △공개된 기술, △기초연구, △특허 출원 관련 기술 등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통제대상에서 제외
- \* 논문발표, 학회참석, 학내교육 등 통상적인 학술활동은 대부분 제외
- \* 대량과피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에 이용되는 기술만 통제 대상

### 1-10 전략기술 수출허가 신청 서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전략기술 수출 시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1부
- ②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 ③ 수출자 서약서 1부
- ④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 ⑤ 사전판정서 1부
- ⑥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단, 수출대상 국가가 미국, 일본 등 “가”지역이거나, 일부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 기술을 해당 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참고]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수출허가 필요서류

목 적	문 서	서류 서식		제출 방법
		물품	기술	
신 청 서	· 개별수출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YesTrade 입력
계약설명	· 수출계약서, 신용장, 주문서 등	자유서식	서면계약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음	첨부서류로 제출
품목설명	· 사전판정서	별지 제4호 서식		판정서 제출은 Yestrade 상 판정발급 번호 조회, 기재로 대 신함
	· 사전판정결과 활용동의서	별지 제4호의2 서식		
	· 자가판정서 · 매뉴얼 또는 사양서 등	별지 제4호의3서식		
서 약 서	·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	별지 제1호의3 서식	첨부서류로 제출
	· 수출자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좌동	
	· 최종수하인 진술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국 정부 발행 수입목적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X	
	· 최종사용자 서약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좌동	

## 2. 기술이전 유형

### 2-1 허가대상 기술이전의 유형은?

☞ 전략기술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2. 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3.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통한 이전

### 2-2 해외로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전송할 때마다 허가가 필요합니까?

☞ 해외로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전략기술 관련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기술이전에 해당 되어 원칙적으로 전송할 때마다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송하는 기술의 내용과 기술을 받는 대상자를 정해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면, 동일한 기술, 동일한 대상자에게 전송할 때마다 매번 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정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AA등급 이상)된 경우, 계약 없이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허가가 면제되며, 사후보고로 대체됩니다.

### 2-3 기술을 노트북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해외에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기술을 저장하여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장된 기술정보를 해외에서 이전(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 자신이 직접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3-13 문항 참조)

### 2-4 서버를 통해 전략기술 정보를 저장하는 것 또한 기술 이전인가요?

☞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술의 이전경로가 아니라 기술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 혹은 국외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버의 지리적인 위치가 해외에 있다하더라도 이용자가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있는 서버에 저장한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외국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됩니다.

### 3-1. 기업 (본사/지사)

#### 3-1-1 원천 기술을 보유한 모기업으로 모기업의 기술수준과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의 전략 기술을 재이전하는 경우도 전략기술 수출로 간주 됩니까?

☞ 이전되는 기술의 수준과 상관없이 전략기술이 이전된다면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모기업이라 하더라도 전략기술이 우리나라 국경 밖으로 이전 또는 재이전 된다면 마찬가지로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단, CP기업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19의 특례에 따라 모기업에 이전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허가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 및 수출지역에 따라 다르오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1-2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전략기술 관련 자료를 보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아닌 일반 기업이 전략기술 자료를 보낼 경우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경우 수출자의 해외 본점에서의 수출 등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에 따라 서류면제 또는 허가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1-3 본 회사는 한국에 있는 일본 자회사로서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 기술자료 전달 및 기술자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동 기술자료 및 기술자의 기술지원 내용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라 통제되는 전략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략기술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전략기술 수출통제는 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수단과 이전 목적지를 불문하고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일본 자회사라 할지라도 기술이 우리나라 국경 밖으로 이전되고, 해당 기술이 전략기술이기 때문에 수출허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3-1-4 본사에서 지사로 기술 이전을 했을 때, 그 기술로 지사가 상품을 개발해서 해외로 판매할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본사에서 지사로 기술이전을 할 때>

지사가 외국에 위치해 있고, 본사가 국내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하면, 본사에서 지사로 기술 이전을 할 때 그 기술이 전략기술이라면 본사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사로부터 이전받은 기술로 지사가 상품을 개발하여 또 다른 해외로 판매할 경우>

지사가 외국에 위치해 있고, 본사가 국내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하면, 당 지사의 수출허가 필요여부는 지사 소재국가의 수출통제 법률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사가 본사로부터 이전받은 전략기술을 이용해 상품을 개발해서(즉, 전략물자를 개발해서) 해외로 판매할 경우, 한국의 본사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수출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으며, 당 제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수출허가 여부는 지사가 위치한 소재국가의 법률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단, 판매에 본사가 개입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중계, 중개허가 또는 해외 인도수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5 전략기술의 이전에 있어서 개인간/법인간 거래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한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A법인에 소속된 개인 B가 한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또 다른 법인 C에 소속된 외국인 D에게 전략기술을 이전할 경우,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 간 거래인지요?**

☞ 기술이전의 상대방(자연인)이 외국인이라면, 법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이 허가 예외 되는 경우는 동일 법인에 소속된 경우에 한정됩니다.(하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 참고) 여기서 '소속'의 의미는 해당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법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 파견 또는 연수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속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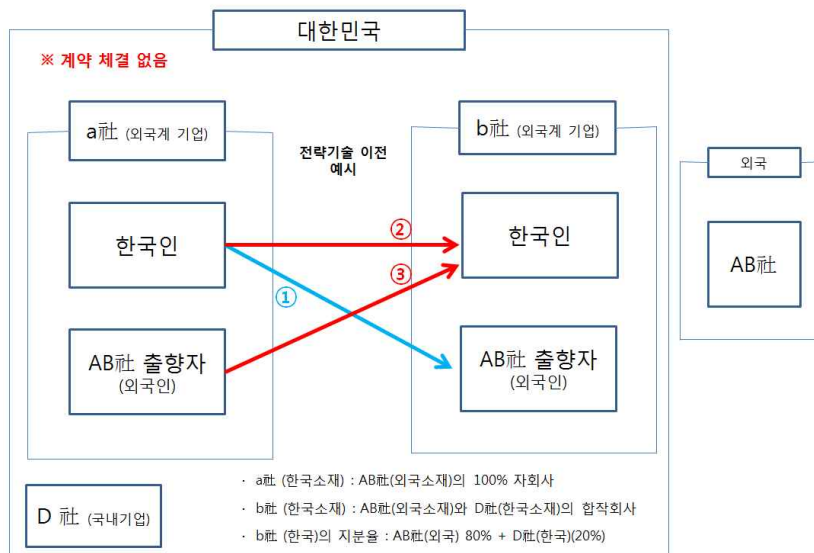
참고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 3항 3호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③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3.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동일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3-1-6 하기의 도식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위의 도식에서 ②, ③의 경우는 A) 국외로의 이전, B)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로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출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까?

☞ b社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을 전제로 한다면,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Q2) 위의 도식에서 ①의 경우는 B) 외국인에게로 이전이므로 수출허가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출허가 대상을

- 1) b社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요?
- 2) AB社 출향자 개인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 3) AB社 출향자의 소속인 외국에 소재한 AB社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 b社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가) AB社 출향자가 b社의 소속 직원인 경우 : AB社 출향자(개인)를 기술도입자로 하여 신청
- 나) AB社 출향자가 AB社의 직원으로 b社에는 단순 파견으로 와 있는 경우 : AB社를 기술도입자로 하여 신청

Q3) 위의 도식에서 ①의 경우, 최종사용자가 a社(수출자)의 최대주주(AB社)인 경우 허가 면제인 특례적용이 가능한가요?

☞ 기술수출허가의 면제는 위 도식에 표시된 바와 같이 '계약 체결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AA 등급 이상의 CP기업에 한하여 [별표19]의 아래 내용에 의해 면제되는 것이며, 최종사용자가 수출자의 최대주주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 체결없이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대상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허가면제(단, 실적보고 시 기술 수출내역 보고)

Q4) 상기의 b社は [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 '모회사(AB社)가 같은 해외법인'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b社は 한국에 소재하는 기업입니다.

☞ '모회사'란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b社를 지배하는 회사가 D社인지 AB社인지를 확인하시고, 만일 b社를 지배하는 회사가 AB社라면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b社가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제)이므로 전략물자 수출시 개별수출허가는 면제입니다. 단, b社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법인'이라면 허가면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수출의 경우라면 Q3)의 답변과 같습니다.

## 3-2. 기업 (해외출장)

**3-2-1 우리나라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외 출장을 나가있는 경우, 이 직원에게 전략기술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출장 목적이 해외에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국적의 출장자 개인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해외 출장지에서의 기술이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허가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2-2 해외 출장 시 가지고 나가는 기술 자료를 해당 출장자만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술 자료를 출장자 본인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술이전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기술자료를 외국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2-3 우리나라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A국 현지법인에 출장을 나가 그 곳에서 설계도를 작성하여 B국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합니까?**

☞ 설계도의 제공(기술이전)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전주체가 우리나라의 출장자(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이는 전략기술을 우리국민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이전의 형태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수출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A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가 이전을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행위인 바, 해당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된다면 해외로 나가기 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3-3. 기업 (외국인 관리)

**3-3-1** 본 회사의 R&D부서에는 중국, 인도 등에서 온 외국인 연구원이 있으며, 그들이 다루는 기술 중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통제되는 전략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전략기술 정보를 제공할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해외로 전략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와 국내외에서 외국인에게 전략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외국인 연구원에게 전략기술이 이전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외국인 연구원이 고용관계 등을 통해 동일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분류가 된다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전략기술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됩니다.

**3-3-2** A국 기업과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A국의 기술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수출허가 대상이 되는 기술이전의 유형 중에는 연수와 같은 기술지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수의 내용에 전략기술이 포함된다면 반드시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3-3** 우리 회사 직원의 일부는 외국인입니다. 사내에서 전략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우리 회사에 재직된 외국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대외무역법 상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전략기술 자료를 이전하는 것은 기술이전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 기술(민감품목 및 초민감 품목 제외)을 동일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3-3-4 외국인 고용할 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 전략기술 수출관리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고용되어 동일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전략기술에 대한 수출허가가 면제됩니다.(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 참고) 다만, 여기서 ‘소속’의 의미는 해당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법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 파견 또는 연수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속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3-4. 기업 (외국 기술이전)

3-4-1 외국에 있는 조선회사와 기술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을 근거로 관련 기술자료 이전 및 기술자 파견을 통하여 기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전략기술 관련 자료의 이전 및 기술자 파견을 통한 기술지원은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근거로 반드시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의 경우, 계약서가 완성되기 전 수많은 기술이전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 성사 이전이라도 수출허가를 받는 것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3-4-2 우리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략기술을 해외 기업에 소속된 특정 연구자에게 이전할 경우 허가의 상대방은 해외 기업인가요 아니면 특정 연구자 개인을 대상으로 받아야 하나요?

☞ 이전된 기술은 해외 기관의 특정 연구자에게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기 힘들며 해당 기관의 다른 부서 등에도 충분히 이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사용자 서약서는 특정 연구자가 작성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는 특정 연구자 개인과 그 연구자가 속한 기관명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당 기술의 이전이 특정 연구자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닌 기관 간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에 따른 이전일 경우에는 수출허가 신청서상 거래상대방과 최종사용자 는 기관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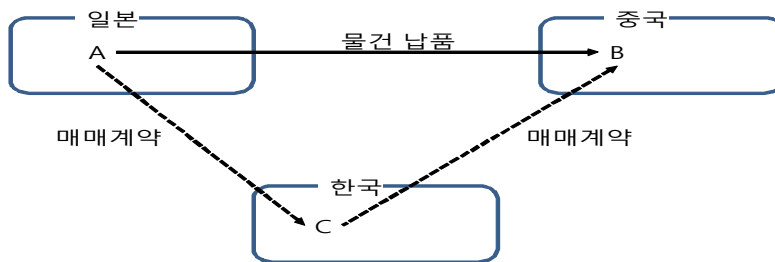
**343 전략기술에 해당되는 내용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 및 이메일 발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매번 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 계약에 따른 계약내용 이행을 위한 행위로서 회의 개최 및 이메일 발송 등 기술정보의 이전이 발생할 경우 매번 수출허가를 신청하실 필요 없이 해당 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 건의 개별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이전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으신 것이며 계약기간동안 추가적인 허가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단, 신청 시 기재한 범위에서 벗어난 기술이 이전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

**344 수출허가를 취득하여 외국에 납입한 전략물자에 대한 수리(공구교환)를 위한 기술을 외국에 제공할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합니까?**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라 수출 허가된 품목의 설치, 운용, 유지(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수리를 위한 기술 지원 행위는 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의 성능이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일 경우, 통제대상이 되므로 전략기술 해당 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45 사전수출허가를 받고 일본 → 중국 전략물자 판매를 중계무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한 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 중국 고객 쪽에서 '기술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기술 보고서는 일본에서 작성하고, 한국에서 번역하여 중국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혹시 일본에서 번역까지 완료하여 중국으로 기술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일반 기술 해설에 따르면 '수출 허가된 품목의 설치, 운용, 유지(점검), 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보 고서'가 아래에 해당된다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p>통제 대상이 아니거나 수출 허가된 품 목의 설치, 운용, 유지(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은 통제하지 아니 한다.</p> <p>주. 위에 의해서 1E002.e.와 1E002.f.항 그리고 8E002.a.와 8E002.b.항에 수 록되어 있는 "기술"은 통제 대상에 서 빠지지 않는다.(즉 통제의 대상 이 된다.)</p>	<p>Controls do not apply to that "technology" which is the minimum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operation, maintenance(checking) and repair of those goods which are not controlled or whose export has been authorised.</p> <p>N.B.: this does not release such "technology" specified in 1E002.e., 1E002.f., 8E002.a. and 8E002.b.</p>
---	---

#### 4-1. 대학/연구기관 (발표 및 토론)

4-1-1 본인은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비공개 회의에서 전략기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허가신청은 개인자격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학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요?

☞ 개인자격으로서 전공 분야 등에 대한 회의 참석 및 발표 등을 통해 기술을 이전할 경우 개인자격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학소유 또는 관리대상의 기술을 타 기관으로의 이전을 위해 대학을 대표해서 발표 및 회의 등을 참석하는 경우에는 대 학 명의로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4-1-2 저는 연구기관에서 신소재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이번에 A국가에서 거행되는 국제학 술회의에서 특정 신소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그 곳에 참석한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과 이에 대해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전략기술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연구결과를 학술회의에 발표할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기술’에 해당되어 수출통제 예외대상입니다. 또한, 외국 연구자들과 토론 역시 동 학술회의에의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발표한 내용을 대상으로 토론할 경우 ‘이미 공개된 기술’과 관련된 토론에 해당하므로 수출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동 국제학술회의가 특정의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출허가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4-2. 대학/연구기관 (외국인 학생 교육)

### 4-2-1 대학에서 석 박사 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전략기술을 이전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학생의 경우 대학에 고용된 임직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에 따른 동일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임직원 관련 허가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2-2 대학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기술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통상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활용되는 기술정보는 일반적으로 기초과학연구에 해당되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초과학연구란 특정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현상에 관한 원리규명을 주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기초과학연구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외국인에게 교육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4-3. 대학/연구기관 (허가예외)

**43-1** 우리 연구소가 보유한 전략기술 또는 전략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S/W를 해외 A기업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기술보유 주체가 아직 우리 연구소이기 때문에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유주체는 국내 연구소라고 할지라도, 실시권을 부여하는 순간, 관련된 기술은 모두 해외에서 전략물자의 개발, 생산, 사용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지식재산권(특허 등) 권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개된 기술로 보기 때문에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동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 등이 별도로 제공될 경우(기술자 파견, 지식재산권에 속하지 않는 추가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3-2** 우리 연구소에서 기술이전하고자 하는 행위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 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면제대상입니다. 이 경우, 우리 연구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수출(이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신청 후 정부로부터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 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정부에 허가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우리정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른 기술이전 시에는 사전에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5-1. 허가신청 시 주의사항

### 5-1-1 전략기술에 대한 수출허가시 정부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 정부는 허가를 신청한 기술이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최종사용자가 실제로 그 기술을 사용하는지 여부, 당해 기술 및 그 기술에 의해 제조되는 제품이 국제적인 평화유지에 저해가 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기술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 5-1-2 자가관정을 통해 전략기술임을 확인한 경우, 자가판정 결과로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보유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 스스로 자가관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기관 내에서 기술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하려고 하는 기술이 전략기술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 등에서 발급한 사전판정 결과만을 인정하고 있으니,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경우 등급(AA등급 이상)에 따라 자가판정 결과로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1-3 전략물자 해당 암호화기술(5E002)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상 적용 가능한 허가면제 조항 2가지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합니까?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 제1항은 주로 품목에 관한 조항으로, 기술의 경우 제26조 제3항을 먼저 적용하고 해당 없으면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며, 따라서 수출거래보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5-2. 허가신청 필요유무

### 5-2-1 회사의 홈페이지에 제품에 관한 기술의 세부 내용을 올리는 것도 기술 이전으로 간주하여 허가가 필요한가요?

☞ 일반인들이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제품의 세부내용, 사진, 도표 등을 올리는 것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전으로서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특정인만 열람이 가능한 공간에 기술을 올리는 것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기술에 해당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5-2-2 고객에게 공급한 전략물자의 품질문제 등으로 고객과 논의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 전략물자(제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기존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된 전략물자의 유지보수 등 품질보증 활동과 관련된 기술이전 사항으로 관련 기술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단, 허가받은 기존 품목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 등이 논의 될 경우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기술의 전략기술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2-3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품목의 계약을 위해 제품 카탈로그 전송, 제품설명회 개최 및 담당자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 제품 카탈로그가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거나 누구나 제약없이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기술로 볼 수 있는 바, 수출통제 예외이며,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제품설명회 시에 전략기술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설명회에 참석하는 인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 공개된 설명회인 경우에도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비공개 자료의 제공 또는 비공개 설명회인 경우에는 전략기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6. 국적기준

**6-1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복수국적자)이 전략기술을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 한국국적 기준으로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이러한 복수국적자가 전략기술을 해외 등으로 이전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2 전략기술을 복수국적자에게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수국적자는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바, 전략기술이더라도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포함하지 않은 다른 2개국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복수 국적 모두를 기재하여야 수출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 록

1. 용어정의
2. 대외무역법





부 록

1. 용어정의

다음은 전략기술수출관리제도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동 제도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파악을 통하여 다른 의미로 혼용되어 쓰이는 용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래식무기(Conventional Weapons) : 일반적으로 대량파괴무기(WMD) 이외의 무기를 말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능이 있거나 컴퓨터가 탑재된 무기를 뜻하는 현대식무기(Modern Weapons)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 단시간에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말합니다.

※ WMD는 이의 제조에 필요한 물품·장비·기술의 다수가 일반산업용(민수용)과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기술(Dual-Use Technology) (=민군겸용기술)이라 위장이 용이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컨대, 핵무기의 원료는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핵 연료주기에서 얻으며, 화학무기의 원료는 비료, 살균제, 살충제, 의약품 등의 원료와 동일하고, 생물무기는 백신이나 의약품의 제조과정을 변형시켜 생산이 가능하며, 미사일 추진체나 유도장치에 적용되는 기술은 통신위성 및 인공위성을 운용할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바세나르체제(WA) : 재래식 무기가 분쟁다발지역, 테러지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무기류 및 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입니다. 1949년 미국의 주도로 결성된 대(對)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인 COCOM을 대체하여 설립되었으며,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가 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며, 기존의 대량 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핵비확산조약(NPT) : IAEA 발족 후에도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IAEA 안전 협정이 현실적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된 조약입니다. NPT는 1968년 UN에서 채택되었으며, 1970년 발효되었습니다.
- 쟁거위원회(ZC) : NPT발효 후 통제조건, 절차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NPT의 성실한 이행 등 확산금지체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1974년에 설립된 체제입니다. 1971년 스위스 끌로드 쟁거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설립이 논의되었고 1974년 핵비확산조약수출국위원회라(Nonproliferation Treaty Exporters Committee)는 이름으로 출범되었습니다.
- 핵공급국그룹(NSG) : 원자력 관련 물품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설립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말합니다. 1978년 미국, 캐나다 등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매년 총회를 개최해 지침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 결정합니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원전기술이나 핵원료를 수출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 제네바 의정서 : 1874년 브뤼셀 선언, 1899년 헤이그 선언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 중 화학무기의 대량사용으로 130여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1924년 채택되어 19개국의 서명을 얻었으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채 종료된 의정서입니다.
-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제네바 의정서를 보완하여 동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획득과 타국 양도 등을 금지한 조약으로 1975년 발효되었습니다.
-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화학무기의 전시사용은 물론 개발, 생산, 비축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면적 금지를 명시한 조약이며, 1992년 발효되었습니다.
-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 1984년 UN 사무총장의 특별사찰단이 이란·이라크 전쟁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을 발견함으로써 화학무기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수출통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호주의 제안으로 화학물질 수출통제에 관한 정책 및 조치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생물·화학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각 회원국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85년 설립된 체제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제네바 의정서, BWC 및 CWC의 보완적 성격을 지닙니다.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미사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비공식 협정입니다. 사정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과 그 부품 및 기술 등에 대한 외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량파괴무기의 발사 시스템인 경우에는 사정거리와 탄두무게에 관계없이 역시 통제대상에 두고 있습니다. 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스트화한 부속서를 만들고,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확산방지구상(PSI) :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국가간 협력체이며, 2003년 5월 미국의 주도로 출범하였습니다.
- 최종사용자 : 전략물자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 능력 등을 갖추고 거래내용을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수출허가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체제 (Compliance Program)를 갖춘 기관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한 산·학·연에 대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특별 규정을 두어 우대하고 있습니다.
- 개별수출허가(Individual Export License) :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 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는 것으로 동일 건(동일수입자, 최종사용자와의 계약 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말합니다.
- 포괄수출허가(Inclusion Export License)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기관에 한하여 일정요건·일정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수출토록 허가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 또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수출 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합니다. 포괄수출허가는 이에 따른 정기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상황허가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나'지역으로 수출하는 자가 당해 품목이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및 사용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여 허가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2 상황허가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우려거래대상자 목록 : 우려거래자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하여 UN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에서 통보한 단체·개인을 말합니다. 전략물자 수출시 우려거래자와의 교역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부 우려거래자의 경우 非 전략물자 수출 시에도 반드시 정부의 사전 허가(상황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CCL (Commerce Control List, 통제품목 리스트) :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의 규제 대상품목의 리스트입니다.

위 가이드스의 문의사항에 대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 전략기술팀 (02) 6000-6435

## 2. 대외무역법

[시행 2014.7.22.] [법률 제12285호, 2014.1.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 044-203-402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 가. 물품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부간 수출계약"이란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등(「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은 제외한다)을 유상(有償)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을 말한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항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③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受荷人)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조건이나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이나 상황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3.3.23.>
- ⑥ 삭제 <2013.7.30.>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① 삭제 <2009.4.22.>

- ② 물품등의 무역거래자(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4조의2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 ③ 삭제 <2013.7.30.>
- [제목개정 2009.4.22.]

**제22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불법수출"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換積)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22., 2010.4.5.,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나 제3항에 따른 경우 또는 환적의 허가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9.4.22.>

**제24조(전략물자등의 중개)** ① 전략물자등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를 위하여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등의 이전·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13.7.30.]

**제24조의2(서류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정에 관한 서류
2. 전략물자등을 수출·경유·환적·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3.7.30.]

**제24조의3(수출허가 등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등의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3.7.30.]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1.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의2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삭제 <2009.4.22.>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제목개정 2009.4.22.]

**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9조제5항제1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제28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1.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 제22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물자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전략물자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2013.7.30.>

1.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 3의2.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⑧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③협의회는 협의회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④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3. 전략물자등의 수출이나 수입에 관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제4호에서도 같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5.>

## 제6장 보칙

**제47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1. 제24조의3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중개허가의 취소
2.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물품등에 대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1. 수입국
2. 수입자·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 분야, 주요 거래자 및 사용 목적
3. 수입자와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그 밖에 운송 수단, 환적국(換積國), 대금 결제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환적·중개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9.4.22.]

**제7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피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경유·환적·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경유·환적·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자
6.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8. 삭제 <2010.4.5.>
9. 제43조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1의2.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2.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품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3.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10.4.5.]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3.7.30.>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6조제3항 본문(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7. 제27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9. 삭제 <2010.4.5.>
10. 삭제 <2010.4.5.>
11. 삭제 <2010.4.5.>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53조의2제1호의2·제2호·제4호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3.7.30.>

**제56조(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의2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09.4.22., 2010.4.5., 2013.7.30.>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8.12.26.]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2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

입은행, 외국환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0.4.5., 2013.7.30.>

1. 제24조의2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삭제 <2013.7.30.>
3.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나 시·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 ④ 삭제 <2009.4.22.>
- ⑤ 삭제 <2009.4.22.>
- ⑥ 삭제 <2009.4.22.>

**부칙** <제12285호, 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전략기술관리 가이드스

---

발 행 처 : 전략물자관리원

주 소 :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305호  
02)6000-6400

편집/인쇄 : 비전테크시스템즈  
02)3432-7132

---

